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 1998. 10. 12 훈령 제275호 〕

일부개정	1999.	1. 28	훈령	제282호
일부개정	1999.	11. 17	훈령	제296호
일부개정	2000.	1. 6	훈령	제297호
일부개정	2000.	4. 21	훈령	제319호
일부개정	2000.	7. 14	훈령	제324호
일부개정	2000.	9. 1	훈령	제327호
일부개정	2001.	1. 2	훈령	제331호
일부개정	2001.	8. 1	훈령	제340호
일부개정	2001.	9. 3	훈령	제341호
일부개정	2001.	10. 24	훈령	제347호
일부개정	2002.	1. 9	훈령	제351호
일부개정	2002.	3. 5	훈령	제353호
일부개정	2002.	8. 13	훈령	제355호
일부개정	2002.	10. 16	훈령	제357호
일부개정	2003.	4. 1	훈령	제360호
일부개정	2003.	12. 10	훈령	제365호
일부개정	2004.	7. 1	훈령	제368호
일부개정	2005.	1. 13	훈령	제373호
일부개정	2005.	3. 16	훈령	제375호
일부개정	2005.	5. 6	훈령	제377호
일부개정	2006.	1. 2	훈령	제381호
일부개정	2006.	7. 12	훈령	제390호
일부개정	2006.	12. 15	훈령	제397호
전문개정	2007.	4. 13	훈령	제408호
일부개정	2008.	10. 20	훈령	제427호
일부개정	2009.	2. 26	훈령	제431호
일부개정	2010.	2. 18	훈령	제439호
일부개정	2010.	10. 5	훈령	제443호
일부개정	2011.	5. 6	훈령	제446호
일부개정	2011.	9. 20	훈령	제450호
일부개정	2012.	2. 17	훈령	제460호
일부개정	2012.	6. 5	훈령	제462호
일부개정	2012.	8. 17	훈령	제466호
일부개정	2013.	1. 10	훈령	제470호
일부개정	2013.	4. 1	훈령	제474호
일부개정	2013.	8. 12	훈령	제480호
일부개정	2013.	12. 12	훈령	제483호
일부개정	2014.	2. 14	훈령	제485호
일부개정	2014.	5. 23	훈령	제487호
일부개정	2015.	2. 22	훈령	제492호
일부개정	2015.	6. 5	훈령	제493호
일부개정	2017.	1. 2	훈령	제508호
일부개정	2017.	7. 13	훈령	제510호

일부개정	2017.	9. 29	훈령	제512호
일부개정	2018.	5. 2	훈령	제517호
일부개정	2018.	12. 28	훈령	제525호
전부개정	2019.	3. 4	훈령	제52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9.	9. 16	훈령	제534호
일부개정	2020.	1. 2	훈령	제539호
일부개정	2020.	2. 21	훈령	제541호
일부개정	2021.	1. 4	훈령	제549호
일부개정	2022.	1. 13	훈령	제554호
일부개정	2022.	6. 23	훈령	제555호
일부개정	2022.	10. 4	훈령	제557호
일부개정	2022.	12. 22	훈령	제558호
일부개정	2023.	6. 22	훈령	제563호
일부개정	2024.	7. 4	훈령	제570호
일부개정	2025.	3. 6	훈령	제5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배정) 연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12. 22]

부칙 <2019. 3. 4 훈령 제52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연천군 법제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제4조제7호 및 제9호 중 “실·과·원·소장”을 각각 “국·담당관·과·원·소장”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호가목 중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원·소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원·소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한다.

② 연천군 소송사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③ 연천군 청문사무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실과원소”를 “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경기도청문사무처리규정”을 “연천군 청문사무 처리규정”으로 한다.

④ 연천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민원실”을 각각 “종합민원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률자문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률자문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표의 사무처리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과”로, “실·과·원·소”를 각각 “담당관·과·원·소”로 하고, 사무의 내용란 중 “실·과·원·소”를 각각 “담당관·과·원·소”로 하며, 근거법령란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⑤ 연천군지도방문조정심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실과소원장”을 “국장·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법무계장”을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⑥ 연천군기획조정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간”을 “부서간”으로 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관계실과원소간”을 “관계 부서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실과원소”를 “부서”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원소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실과원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소관실과원소장”을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원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연천군 통계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원소, 사업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별표 1의 본청란 중 “총무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총무담당”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하고, 사업소란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며, 읍면란 중 “총무담당”을 각각 “총무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결재란 중 “총무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참고란 제2호 중 “실과원소”를 “부서”로 한다.

⑧ 연천군이미지형성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과·원·소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실·과·원·소”를 “담당관·과·원·소”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무담당 주사(담당이 없는 부서는 서무담당자)”를 “주무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총무담당주사”를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법무담당주사”를 “홍보팀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담당주사”를 “홍보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을 “종합민원관”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산업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건설교통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담당주사”를 “홍보팀장”으로 한다.

⑨ 연천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무및시설물지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당해 담당실과원소장”을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제4조 및 제5조 중 “담당 실과원소장”을 각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 “관광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⑩ 연천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실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원소장”을 “부서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⑪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건설과장”을 “투자진흥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실 감사분야”를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으로 한다.

⑫ 연천군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⑬ 연천군 청사방호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⑭ 연천군 직장동호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안전행정팀장, 여성다문화팀장, 체육진흥팀장”을 “행정지원팀장, 여성가족팀장, 문화체육시설팀장”으로 한다.

⑮ 연천군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를 “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⑯ 연천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안전행정과장, 복지지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농축산과장, 건설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종합민원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⑰ 연천군 읍·면 지도담당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단·원·소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단·원·소장”(이하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원장·소장”(이하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실과소”를 “담당부서”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중 “실과장”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

⑱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4조1목나호 중 “실·과·원·소장”을 “담당관, 과장, 원장, 소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국민안전처장관”을“행정안전부장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안전행정과장”을“투자개발국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⑲ 연천군민방공경보단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자치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⑳ 연천군 민방위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㉑ 연천군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실·과·소”를 “부서”로 한다.

㉒ 연천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복지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농축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9. 9. 16 훈령 제53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2 훈령 제53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21 훈령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연천군시설관리공단위탁사무및시설물지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② 연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투자진흥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③ 연천군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④ 연천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연천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고객지원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⑥ 연천군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투자개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목나호 중 “담당관, 과장, 원장, 소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 원장, 소장”으로 한다.

부칙 <2021. 1. 4 훈령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연천군 이미지 형성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도시주택과”를 “도시과”로 한다.

② 연천군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2. 1. 13 훈령 제554호>

이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6. 23 훈령 제555호>

이 규정은 2022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4 훈령 제557호>

이 규정은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2 훈령 제558호>

이 규정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2 훈령 제563호>

이 규정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4 훈령 제57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6 훈령 제57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 <개정 2025. 3.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정원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